



2026년도 [재]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종 합 감 사 결 과



2026년도 [재]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종합 감사 결과

I 감사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재)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기간제 근로자 등 채용, 복무, 예산 및 회계 집행상의 비효율·낭비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감사
- 업무상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제도 발굴 및 개선

2. 감사범위

- '24. 8. 21.(수) ~ '26. 6. 12.(금) 업무 전반

3. 감사기간 및 인원

- '26. 6. 1.(월) ~ '26. 6. 12.(금) 감사인원 4명을 투입하여 감사 실시
- (사전조사) 6. 1.(월) ~ 6. 5.(금) / (실지감사) 6. 9.(화) ~ 6. 12.(금)

II 감사결과

1. 처분요구 총괄

(단위 : 건 / 천원)

총계 (a+b)	신분상 처분			행정상 처분						
	합계 (a)	원처분(건)		합계 (b)	시정			주의	개선	기관 경고
		징계 (명)	훈계· 주의 (명)		재정상 처분(건 / 천원)					
					소계	회수	추징			
25(6명) /195	3 (6명)	-	3 (6명)	22 / 195	2 / 195	2 / 195	-	17	2	1

2. 처분요구 목록

(단위 : 건 / 천원)

연번	감사 분야	지적사항	처분내역					비고
			신분상	행정상				
				시정 (재정상 회수)	주의	개선	기관 경고	
총계	원처분	25건[(재)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24, 농산유통과 1]	3(6명)	2 / 195	17	2	1	
소계		(재)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 원처분 24건	3(6명)	2 / 195	16	2	1	
1	복무	직원 복무관리 소홀			○			
2		공용차량 기록관리 소홀			○			
3	채용	신규채용 임직원 친인척 현황 대외 공개 의무 미이행			○			
4		직원 채용계획 사전 협의 미이행			○			
5		면접심사위원 사전 교육 미실시			○			
6		병역 미필자에 대한 응시 부당 제한			○			
7		면접 심사위원 제척·회피·기피 제도 운영 위반	○(2명)					
8	물품	물품관리 업무 소홀			○			
9	안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 소홀			○			
10	계약	감독자 및 검사자 미선임 등 업무 추진 소홀			○			
11		수의계약 내역 공개 업무 추진 부적정			○			
12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			
13		계약보증금 징구 소홀			○			
14	회계	회계장부 마감 업무 소홀			○			
15		업무용 신용카드 등 관리 부적정			○			
16		복리후생비 집행 부적정			○			
17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1 / 100				
18		공가사용 및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1 / 95				
19	예산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절차 부적정					○	
20		광고선전비 예산 낭비				○		
21	공인 관리	공인 관리업무 소홀			○			
22	기타	장성한상 잠정 휴무에 따른 재산상 손해 및 재단 위신 손상	○(3명)					
23		재단 복무 규정(영리업무 금지) 위반 및 사적 출하 부적정	○(1명)					
24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정관 및 제규정 정비				○		
소계		농산유통과 : 원처분 1건	-	-	1	-	-	
25	기타	출연기관 사무의 지도·감독 소홀			○			

- 2026. 6. 1.(월)부터 6. 12.(금)까지 (재)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재단 직원들의 복무, 채용, 계약 등 업무 관련 법령·지침 및 정관·제규정에 대한 숙지 부족과 업무 미숙으로 인해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어 총 24건의 지적사항이 발생하였다.
- 특히 재단 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에 농산물을 출하한 행위는 사적이익을 도모한 행위로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 그리고 신규 직원 채용 시 감독부서인 농산유통과의 사전 협의 과정을 누락하였고, 배제 대상인 심사위원을 면접위원으로 위촉하여 제척·회피·기피 제도를 위반함으로써 공정채용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훼손하였다.
- ‘장성한상’ 근로자 계약 종료가 예견되었음에도 적기에 인력 운영 조치를 마련하지 않아 잠정 휴무에 이르게 방치하였고, 영업 중단 상태에서 잔류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장성군 재정에 손해를 입히고 재단의 명예를 실추하였다.
- 아울러 투명한 인력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종료 및 재계약 심사 시 필요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세부 인사 관리 지침이 없어 인력 관리의 공신력을 저해하였다.
- 또한, 투명한 매장 운영을 위해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과 ‘장성한상’ 및 ‘공공급식’ 모두 명확한 운영 기준(제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첨단직매장의 경우 ▲진열기간 경과 농산물 회수·폐기 관리 기준 ▲판매수수료를 구체적 적용 기준 ▲회수 품목의 재포장 후 재진열 방지 등에 대한 세부 규정 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 끝으로, 이번 감사를 계기로 (재)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정관과 제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향후 감사 시 지적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부서인 농산유통과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

1. 공용차량 기록관리 소홀 (행정상 주의)

-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공유재산 사용 등)에 따르면,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2021. 4. 9. 최초 구입한 공용차량 95로 0619를 포함 9대의 공용차량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용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현재까지 마련하지 않아 재단 소유의 공용차량을 관리*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 관리 사항 : 차량배차신청(승인)서, 차량유류수불대장, 차량운행일지, 차량정비 대장,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2. 직원 복무관리 소홀 (행정상 주의)

-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복무 규정」 제2조(적용범위)에 따르면, “재단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과 기타 관계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재)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복무 규정」 제6조(근무시간 및 방법)과 제8조(출근 및 결근) 규정에 따라 직원은 근무를 해야 하며, 제5조(복무원칙) 제2항 제5호에 따르면, ” 근무시간 중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행위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2024. 8. 21.부터 2026. 6. 12. 현재까지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직원의 출퇴근시스템 확인 결과, 총 272건(경영지원팀 65건, 로컬푸드팀 108건, 공공급식팀 68건, 기획생산팀 11건)은 출근시간이 입력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신규채용 임직원 친인척 현황 대외 공개 의무 미이행 (행정상 주의)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가족채용 제한 및 채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매년 신규 채용된 직원 중 기관의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대외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재)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2024. 8. 21.부터 2026년 감사일 현재까지 총 28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자를 대상으로 임직원 친인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 또한, 매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할 임직원 친인척 채용 현황을 현재까지 한 차례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4. 직원 채용계획 사전 협의 미이행 (행정상 주의)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지침」(행정안전부 2023. 12. 12.) III. 직원의 인사 채용계획 수립에 따르면 기관장은 공고예정일 15일 전까지 채용계획을 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리고 사전 통보내용에는 채용의 필요성, 예상결원 및 정·현원 현황, 채용인원, 응시자격 요건, 필기시험 여부, 서류전형 심사 기준, 면접방법, 시험단계별 시험위원 위촉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한편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인사 규정」에 따르면 (재)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인사관리의 공정성과 합리화를 위해 인사위원회를 두고 직원의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야 하며, 직원 채용 시에는 자치단체장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 그런데 (재)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2024. 8. 21.부터 2026년 감사일 현재까지 8건의 채용을 진행하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공고예정일 전까지 채용계획에 대하여 자치단체장과 사전협의하여야 하는데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5. 면접심사위원 사전 교육 미실시 (행정상 주의)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은 채용 시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면접위원에게는 응시자의 인적사항 정보제공 금지, 연령·성별·학력 등 차별적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평정방법,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 진행절차 등 면접시행에 필요한 사전 면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면접심사 전 면접위원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 위반 소지가 있는 질문을 차단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접 사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그런데 (재)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2024. 8. 21.부터 2026년 감사일 현재까지 6차례의 면접심사를 진행하면서 면접위원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 질문 금지 및 평정방법 등에 대한 사전 면접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면접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

6. 병역 미필자에 대한 응시 부담 제한 (행정상 주의)

-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재)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2024. 8. 21.부터 2026년 감

사일 현재까지 총 7차례 신규채용 공고를 하면서 공고문 응시 자격에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6개월 이내 전역 가능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한 사실이 있다.

7. 면접 심사위원 제척·회피·기피 제도 운영 위반 (신분상 주의 2명)

-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면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과거에 동일한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등 시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에서 제척·회피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재)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면접심사 전 면접위원을 위촉할 때 면접위원과 응시자 간의 이해관계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면접위원으로부터 이해충돌 방지 및 제척·회피 서약서를 징구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그런데 (재)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3건의 채용 면접 심사를 진행하면서 8명의 응시자가 면접위원과 근무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해당 면접위원을 제척하거나 본인이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면접심사에 참여토록 하여 면접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실이 있다.

8. 물품관리 업무 소홀 (행정상 주의)

-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물품 관리 규정」(이하 “물품 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재단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산과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물품 관리규정」 제5조에 따르면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 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물품의 보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물품관리종사자는 비품대장, 소모품대장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 또한, 「물품 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서 매년 1회 모든 물품에 대해서 실제의 수량과 장부상의 수량을 대조 확인하는 정기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런데 재단은 모든 물품에 대하여 비품대장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여 야함에도 관련 대장을 감사일 현재까지 작성하지 않았고, 매년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망실, 훼손, 유헴 물품 현황을 파악해야 하나, 이를 수년간 실시하지 않아 자산 관리의 실효성을 상실하는 등 물품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9.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등 소홀 (행정상 주의)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인력, 예산 등 확보) 등을 하여야 한다.
- 따라서 센터장은 사업장의 유해 및 위험요인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산업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에 따라 각종 법령과 규칙 등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이행하고 점검 후 나타난 조치 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까지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 시킬 의무가 있으며,
-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경영할 때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공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강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그런데 재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조치, 관리상의 조치 등을 미이행한 사실이 있다.

10. 감독자 및 검사자 미선임 등 업무 추진 소홀 (행정상 주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직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하고, 감독을 하는 자는 “(기성부분, 준공)감독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또한 「지방계약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직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고, 계약담당자 또는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검사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규정에 따라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 계약 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 직원에게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 재단은 감사일 현재까지 12건의 공사 및 용역에 대해서 공사감독자 및 준공검사자를 선임(위임)하지 않았고 공사(용역)감독자의 감독조서도 없이 공사(용역)준공검사를 완료하여 사업비를 지급하였다.

- 그로 인하여 공사 및 용역결과물에 대하여 품질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자 등 발생 시 감독자, 검사자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재단의 업무 추진 신뢰도에 훼손을 초래하였다.

11. 수의계약 내역 공개 업무 추진 부적정 (행정상 주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124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주계획, 계약체결의 현황, 계약 내용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제8절에 따르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정보 공개 시 규정된 공개내역서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재단은 공사·용역·물품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된 서식으로 계약 내용을 작성하여 재단 홈페이지에 계약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그런데 재단은 감사일 현재까지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업체명, 계약 금액, 계약기간, 수의계약사유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채 부적정하게 업무 처리하고 있다.

12.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행정상 주의)

-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재무회계 규정」(이하 “재무회계 규정”이라 한다) 제97조에 따르면 물품 조달이나 기타 재산적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계약에 따라야 하고, 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그리고 재무회계 규정 제129조에 따르면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 제조 또는 물품을

매입할 때, 기타 지방계약법령상의 수의계약 조건을 충족할 때” 라고 되어 있다.

- 한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추정가격이 2억 원 이하인 전문공사,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제3절-1.-나.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G2B)에 일정기간(3일 이상) 수의계약 안내 공고를 하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 그런데 재단은 3건의 공사 및 용역에 대해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안내 공고 후 2인 이상 견적 제출을 받고 계약자를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계약 행정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3. 계약보증금 징구 소홀 (행정상 주의)

-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재무회계 규정」(이하 “재무회계 규정”이라 한다) 제100조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로 하여금 현금 또는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자기앞수표로써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정 제101조에 따르면 계약보증금은 계약의무 완료와 동시에 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계약의 이행보증)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내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5천만 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계약보증금 면제) 각 호 관련으로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다만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은 자에게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확약서”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재단에서는 주요 공사, 용역 등 총 39건에 대해서 수의계약 체결하면서 계약보증금 또는 확약서를 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보증금 또는 확약서를 미징구하여 계약에 관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14. 회계장부 마감 업무 소홀 (행정상 주의)

- 재단「재무회계 규정」 제24조(회계장부의 종류)에 따르면 회계장부는 주요부와 보조부로 구분하여 주요부는 분개장과 총계정 원장으로 하고 보조부는 각 계정 원장 및 명세장으로 한다. 다만, 전표 및 일계표를 일자 순으로 철하여 분개장에 갈음할 수 있다.
- 또한 같은 규정 제25조(총계정원장) 및 제26조(보조부)에 따르면 총계정 원장에는 집계된 각 계정의 대변 또는 차변의 합계 금액을 전기하여야 하고, 각 계정원장 및 기타 명세장은 해당 계정의 거래 일체를 명확히 분류 기입하는 것으로 전표에 의하여 개별 기장하되 매월 말 총 계정원장의 해당 계정과 대조하여 정확하게 일치하여야 한다.
- 그리고 같은 규정 제27조(장부마감)에 따르면 현금출납부 및 예금원장은 매일 마감하여야 하고, 총계정 원장과 각 계정원장 및 기타 보조부는 매월 마감하여야 한다.
- 그런데, 재단에서는 설립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회계업무를 처리하면서 예금원장 및 현금출납부를 매일 마감하여 회계장부 간에 불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매월 말 총계정 원장과 개별 계정을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등 회계장부 마감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15. 업무용 신용카드 등 관리 부적정 (행정상 주의)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신용카드 등 발급 및 관리 요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발급 시에는 신용카드 등 발급대장(별표 제1호 서식)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 임직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해야 한다.
-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동안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업무용 직불카드 31개를 발급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금번 감사일 현재까지 신용카드 발급대장을 미작성하여 비치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신용카드 비밀번호 부여 및 관리책임자 교체에 따른 변경 사항도 이행하지 않는 등 카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16. 복리후생비 집행 부적정 (행정상 주의)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복리후생비는 주민의 눈높이를 벗어난 과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을 지양하고 지방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해야하고 <복리후생비 주요 항목별 준수사항> 및 각 기관의 복리후생규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하며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 한편,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복무 규정」 제28조(급식 및 피복지급), 같은 규정 제29조(건강진단) 및 제30조(맞춤형복지제도)에 따라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동안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 36건(18,932천원), 과도한 단체복 구입 4건(12,122천원)으로 복리후생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17.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시정(재정상 회수 : 100천원)]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제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그리고 축의·부의금품은 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하되 기관별 대표 1인만 집행하고 경조사와 관련된 경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¹⁾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
- 또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에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해야 하고 신용카드 등 적용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용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동안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하였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지급관리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지 않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 □□□에게 조의금(100천원) 및 화환(100천원)을 중복 지급하였고 □□□□ □□□□ □□ □□□ □□를 구입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 ○○○로 카드 결제가 아닌 계좌 이체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1)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18. 공가사용 및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시정(재정상 회수 : 95천원)]

-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소속 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는 「복무 규정」에 따라 공가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사유에 맞게 연가나 병가 또는 특별휴가를 사용해야 한다.
-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동안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소속 직원의 공가 사용 실태를 점검한 결과 소속 직원 1명이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다.
- 한편, 공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데도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공가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연가 1일에 대한 연가보상비 95,110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19.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절차 부적정 (기관 경고)

- 「지방출자출연법」 제18조에 따르면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19조제1호에 따르면 이사회는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되어있다.
- 그리고 「재무회계 규정」 제73조에 따르면 이사장은 다음연도의 예산안을 매년 9월까지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으로 확정되며, 예산편성은 재단에서 정한 제규정 및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수립하며, 「재무회계 규정」 제76조 따라 예산이 성립된 후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거나 추가경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으로 확정된다.
- 또한, 「재무회계 규정」 제80조에 따르면 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 할 경우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취지를 분명하게 정리하고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그런데 재단에서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다음연도의 예산안을 매년 9월까지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그리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42건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25년 배후마을 지원사업, 2024년 공공급식 운영 차량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이월 설명서 미작성 및 다음 회계연도 예산에 미편성하여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에 대한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다.

20. 광고선전비 예산 낭비 (개선 요구)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통신료는 공공운영비에 편성해야 하며 광고선전비는 TV, 신문, 잡지 등에 의한 광고료에 대하여 대행사업, 일반관리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여 집행해야한다.
- 그리고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예산편성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지출예산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최소 경비만 예산에 편성해야하며 광고(홍보)예산은 기관설립목적 및 경영목표와 광고효과 등을 감안하여 절감 편성하고, 기관 이미지 등 단순 홍보성 광고비 편성을 지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재단에서는 2024년 12월부터 2026년 6월 감사일 현재까지 광고선전비를 집행하면서 공공운영비로 집행해야할 KT 문자 비용 총 33,004천원을 광고선전비로 집행하였을 뿐만아니라 장성로컬푸드 첨단 직매장, 농가레스토랑 장성한상을 홍보할 목적으로 카카오 대행수수료(61,602천원), KT 문자 요금(33,003천원)으로 이중 지출하여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1. 공인 관리업무 소홀 (행정상 주의)

-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 이라 한다.)에서는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인관리 규정」(이하 “공인 규정” 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이사장 공인, 회계관계 공인에 대하여 공인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비치 관리해야 하고 같은 규정 제5조에 따라 공인에 재단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회계관계직에 직명을 각각 구분하여 각인해야 하고 같은 규정 제7조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폐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지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 그리고 「공인 규정」 제6조에 따라 공인을 전자이미지로 등록할 수 있고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 공인대장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관리하여야 하며, 등록된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 또한 「공인 규정」 제8조에 따라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 그런데 재단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이사장 직인만 각인하여 회계관계 직인, 감사 직인 등 관계 직인을 별도로 각인하지 않고 계약업무 체결 등에 이사장 직인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이사장 직인을 전자이미지로 등록하면서 전자이미지 공인대장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 및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2. 장성한상 잠정 휴무에 따른 재산상 손해 및 재단 위신 손상

(훈계 3명)

-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복무 규정」(이하 “복무 규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르면 “직원은 재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및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2025. 6. 19.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농가레스토랑 장성한상”을 운영하면서 주방장 계약 종료에 따른 대체자 사전 채용 및 계약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2026. 5. 12.부터 잠정 휴무에 들어감으로 계약기간이 남은 “농가레스토랑 장성한상” 근로자 7명에게 총10,246천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재단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뿐만아니라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해 운영 하는 “농가레스토랑 장성한상”이 잠정 휴무에 들어감에 따라 언론에 기사화되는 등 재단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3. 재단 복무 규정(영리업무 금지) 위반 및 사적 출하 부적정

(훈계 1명)

-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 센터장은 「광주권 첨단 장성로컬푸드 직매장 생산·출하 운영규칙」에 따른 농산물 출하 약정, 매장 진열, 품질 관리, 수수료 책정 등 직매장 운영 전반을 총괄 관리·감독해야한다.
-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복무 규정」(이하 “복무 규정”이라 한다.) 제5조(복무원칙)에 따라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로써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상 권한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재단은 2026년 6월 30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 예정됨에 따라 그 임직원은 「공직자

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의거하여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본인 또는 가족 등)임을 안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 그런데 □□□은 2023. 8. 12.부터 2025. 8. 31.까지 본인 명의로 센터와 출하조사서(약정서)를 체결하고 총 16,746천원 상당의 ○○○ 426박스를 로컬푸드 직매장에 지속적으로 출하하여 부당한 사적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있다.

24.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정관 및 제규정 정비 (개선 요구)

-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정관」(이하 “재단 정관” 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르면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 심의·의결 사항이고 같은 규정 제38조에 따라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군수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규정 제42조에 따라 장성군청 및 재단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제규정 관리 규정」(이하 “재단 제규정 관리 규정” 이라 한다.)에 따라 필요한 제규정을 입안하여 제정 및 운영할 수 있다.
- 그런데 재단에서는 감사일 현재까지 「재단 정관」에 “농업유통과(現농산유통과), 건설산업국장(現건설농정국장)”과 같이 이전 부서 명칭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고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조직 및 정원규정」(이하 “재단 조직 및 정원규정” 이라 한다.)이 「재단 정관」정원을 위반하여 제정 및 운영되고 있었다.
- 또한, 재단에서는 “장성로컬푸드 첨단직매장”을 운영하면서 진열기간 경과 농산물 회수 및 폐기 관리, 판매수수료를 변경 및 적용 기준, 회수 품목의 재포장 후 재진열 방지 기준 등에 대한 제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었을 뿐만아니라 “농가레스토랑 장성한상” 운영 제규정, “공용차량 관리” 제규정 또한 제정하지 않고 운영 및 관리한 사실이 있다.

25. 출연기관 사무의 지도·감독 소홀 (행정상 주의)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 제25조(지도·감독 등)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에 위탁한 사업,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재단 조례”라고 한다.) 제19조(감사 및 지도감독)에 따라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 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 그런데 2024. 8. 2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농산유통과에서 재단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한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24년부터 2026년 현재까지 재단에서 세입·세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산을 사용하는 등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또한 재단법인 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2024. 8. 21.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채용을 진행하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공고예정일 전까지 채용계획에 대하여 자치단체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농산유통과에서는 절차 확인 및 지도 없이 장성군홈페이지에 그대로 공고하였고, 심지어 재단에 인사 및 노무 관련 협조와 관련된 공문을 재단에 시행함에 따라 채용 공고와 관련된 사항을 더 철저히 지도·감독했어야하나 2026년에 총3건의 지적 사항이 발생하여 채용공고 관련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